

의안번호	제636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24년 7월 3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#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3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4년 7월 3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2023. 12. 29. 제정·시행된 「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 등에 맞게 임산부 혜택 신설 반영함.
- 「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조령산자연휴양림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중 숙박시설 예약자에게 시설사용료 감면과 별개로 결제금액의 50%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기 위한 기준을 신설 반영함.
- 우선예약 대상자에 다자녀 가정·장애인·산림복지바우처 대상자 등을 추가하여 경제적·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하려는 것임.
-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의 중복 금지 조항을 추가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감면 혜택에 혼동을 줄이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임산부 정의 항목 신설(안 제3조제18호)
- 우선예약 대상에 다자녀 가정·장애인·산림복지바우처 대상자 추가(안 제11조제2항)
- 「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(안 제12조제1항제4호)
-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의 중복에 대한 금지 조항 추가 신설(안 제12조제3항)
- 주중 숙박시설 예약자에게 결제금액의 50%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기준 신설(안 제21조)
- 임산부 시설사용료 감면 신설(별표2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##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”로 한다.

제3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“임산부”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재직자”를 “재직자, 다자녀 가정, 장애인, 산림복지바우처 대상자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4호 중 “가정”을 “가정, 임산부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1개 사항만을 적용한다.

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,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(이용객에 대한 지역상품권 환급) 도지사는 주중에 숙박시설을 예약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제금액의 50%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. 다만, 도지사가 관광 사업의 활성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환급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설물 사용에 대한 예약을 완료하였거나 시설물을 사용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별표 2]

1. 시설사용료의 감면율

구분	감면대상	기준	감면요율	비 고
숲속의집, 복합휴양관, 무궁화관	장애인	중증	요금의 50% 할인	비 수 기 주 중 에 한 함
		경증	요금의 30% 할인	
	국가보훈대상자	1~3급	요금의 50% 할인	
		4~7급	요금의 30% 할인	
	다자녀가정		요금의 30% 할인	
	임산부		요금의 50% 할인	
	병역명문가 가족		요금의 30% 할인	
	도민		요금의 20% 할인	
	고향사랑 기부자		요금의 20% 할인	
	도민대상 및 명예도민		요금의 50% 할인	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5 및 <u>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</u>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등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. ~ 17. (생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11조(예약신청 및 성립) ① (생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② 도민 및 도내 소재 가족친화인증 기업·기관 <u>재직자</u>는 숙박시설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예약하게 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③·④ (생략)</p> <p>제12조(시설사용료 등의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. ~ 17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8. <u>“임산부”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.</u></p> <p>제11조(예약신청 및 성립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② ----- ----- <u>재직자, 다자녀 가정, 장애인, 산림복지바우처 대상자</u>-----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시설사용료 등의 감면) ① ----- -----</p>

면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4. 장애인, 국가보훈 대상자,  
다자녀 가정, 병역명문가 가족이  
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

5.·6. (생략)

②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21조 (생략)

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 
가정, 임산부-----  
-----

5.·6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 
유리한 1개 사항만을 적용한다.

제21조(이용객에 대한 지역상품권 환급) 도지사는 주중에 숙박 시설을 예약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제금액의 50%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. 다만, 도지사가 관광 사업의 활성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환급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22조 (현행 제21조와 같음)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

제21조의5(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)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2. 21.>

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8. 2. 21.>[본조신설 2015. 1. 20.][제목개정 2018. 2. 21.]

### □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임산부”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. [시행 2023. 12. 29.]

제5조(입장료 등 감면)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(이하“도”라 한다)에서 설치·관리하는 문화·체육·관광시설(부설 주차장을 포함한다. 이하 “공공시설”이라 한다)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·사용료·관람료·주차료(이하 “입장료등”이라 한다)를 감면할 수 있다.

### □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

제4조(관광객유치 지원 등) ① 도지사는 사업자단체 또는 여행사가 도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5. 11.>

5. 그 밖에 도지사가 도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

② 관광객유치와 관련하여 시·군에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·군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#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운영 내실화로 휴양림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환경을 제공하고자 필요 사항 규정

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조령산자연휴양림 등 도내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주중 숙박시설 예약자에게 시설사용료 감면과 별개로 결제금액의 50%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함에 따른 소요 예산 발생

## 3. 관련조문

- 안 제21조(이용객에 대한 지역상품권 환급)

## 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 :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

○ 내용

- 추계기간(5년간)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조례안 제21조에 따른 지역상품권 환급에 대한 비용 추계

나. 추계 결과

- 시설이용객에 대한 지역상품권 환급

- (신설) 지역상품권 환급

$$\cdot \text{객실수}(44\text{실}) \times \text{가동률}(41\%) \times \text{평일수}(160\text{일}) \times \text{평균이용료}(49\text{천원}) \times \text{환급률}(50\%) = \underline{70,720\text{천원}}$$

다. 재원조달방안

- 「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」 제4조1항에 따른 도비 지원(100% (年 70,720천원))

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## 6. 작성자 :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은

## < 연도별 비용추계서 >

(단위: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계
세 출	70,720	70,720	70,720	70,720	70,720	353,600
(안 제21조) 지역상품권 환급	70,720	70,720	70,720	70,720	70,720	353,600
재원 조달	70,720	70,720	70,720	70,720	70,720	353,600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
	지방세					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도 비	70,720	70,720	70,720	70,720	70,720	353,600
기 금						
특별회계 △△특별회계						
구·군비						
기 타 (차입금, 만자, 예비비 등)						